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46
----------	------

제출년월일 : 2008. 9. 9.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노상·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법과 부합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 이면도로의 노상 등에 거주자 및 근로자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행근거 및 바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운동장 등의 야간개방을 유도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및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적법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자동차 소유자의 자택내 차고지 확보 노력과 시의 지원 규정 마련 및 공영유료 주차장의 주차거부금지 조항과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2. 공영주차장 위·수탁 계약시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수탁료 지급방법과 입찰시 수탁료 최저가 금액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위탁 계약기간을 새로이 정함(안 제5조).
3.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조항과 주차요금 체납 징수절차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급지조정 및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4. 노상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구획의 표준 규격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거주자 및 근로자 전용주차장 설치근거 및 운영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제10조).
5. 「건설기계관리법」 규정과 상충되는 건설기계 차고지 제공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차고지 이용차량의 주차요금을 정함(안 제12조).
6.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4조).

7.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거리를 설치대수에 따라 달리 정하고, 부설주차장에 소요되는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8. 주거지역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등의 야간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으로 개방시 설치비용 지원 및 주차요금 징수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19조).
9. 부설주차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0조).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32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08. 8. 8. ~ 2008. 8. 27.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안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 계획(2008. 5. 21.)
- 안산시 소비자정책 심의 의결 (2008. 7. 15.)
- 현행조례(전문)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확보 노력)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택 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거부금지) 시장 또는 주차장 관리 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①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 주차장의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 ②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시방법, 설치위치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 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부족으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위·수탁계약이 종료 해지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 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2.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주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 또는 능력(실적)이 있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관리 수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수의 계약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료	1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 계약	입찰금액(단, 제3항 규정에 의한 수탁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1개월 단위로 선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시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수탁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유료주차장 : 점용면적(m^2) × 당해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지수
2.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조립식 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m^2) × 면수 × 당해(또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 25/1000 × 기간(년) × 지수
3. 환승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m^2) × 면수 × 당해(또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 25/1000 × 기간(년) × 지수

각 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

* 지수 = _____

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에 있어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임야일 경우 인근대지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⑤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⑥ 재계약시 수탁료는 당초 수탁료와 계약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 ⑦ 시장은 국가·경기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로 인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⑧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금액은 주차면수 및 주차면적, 무료개방 및 사용일수, 납부 할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산정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주차장 관리자가 계약기간 중 주차장관련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공영유료주차장내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7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을 “공영유료주차장”이라 하며 그 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차요금 외에 당해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차장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또는 잔여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운영의 중지 또는 폐지
2.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차 불가
3.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 요청

③ 주차구획을 초과하여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차량이 점유한 주차구획 만큼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④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가 운영 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 노상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노상에는 근로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하는 거주자 또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는 “거주자”라 한다) 전용 주차 구간에 대하여는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당해 지역 거주자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별표 2의 이용요금을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주자 전용주차 구간에는 주차구획 및 이용시간을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는 별표 1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노외주차장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12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①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 2.5톤 미만의 개별화물자동차 : 1 · 2 · 3급지 주차면적의 30퍼센트 범위 이내
2.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노선여객 자동차는 제외) : 별표 3이 정하는 주차장 주차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이내
② 제1항에 의하여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4의 월 정기 주차금액으로 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
③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기타 계약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시설의 종류)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균린생활시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제3장 부설주차장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별표 6을 적용한다.

③ 기계식주차장(지하식, 전축물식)의 경우 도시미관 저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는 등 그 사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고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2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의 총 설치비용(토지

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및 토지가액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
3.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의 바닥 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坦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의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입구에는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운동장 등의 야간개방) ①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등(이하 이 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야간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시설보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의 이용은 유료로 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제7조 별표 2에 따른 공영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안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한다.

④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정해진 주차시간 외의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견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 주차차량을 견인한 후 견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제3항에서 정한 월정주차료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옥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권한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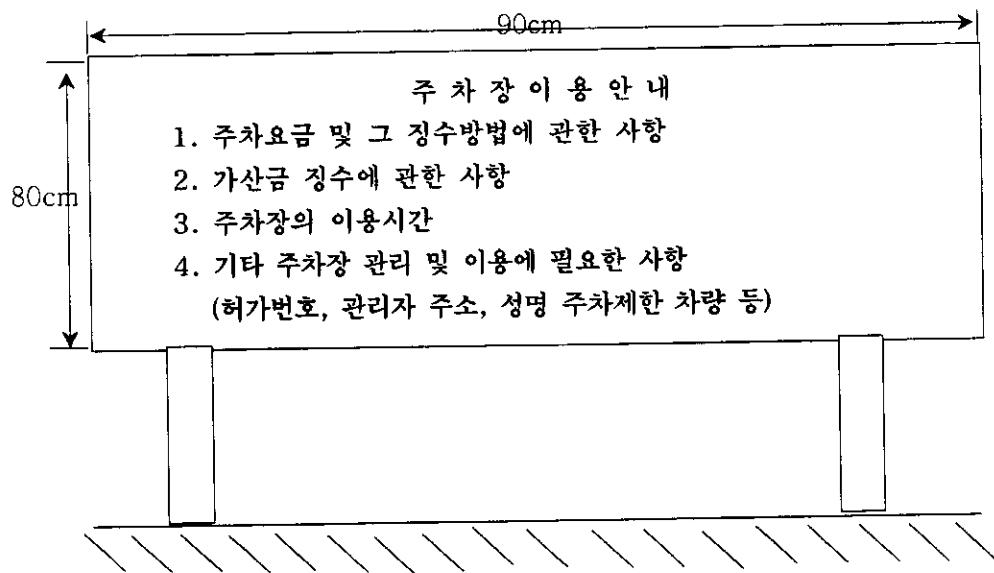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설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		교통기획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통기획과장 이 장 원
	담당·팀장 직위·성명	주차장 담당 김 창 섭 (행정 2973)

[별표 1]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설치기준(제4조 관련)

1.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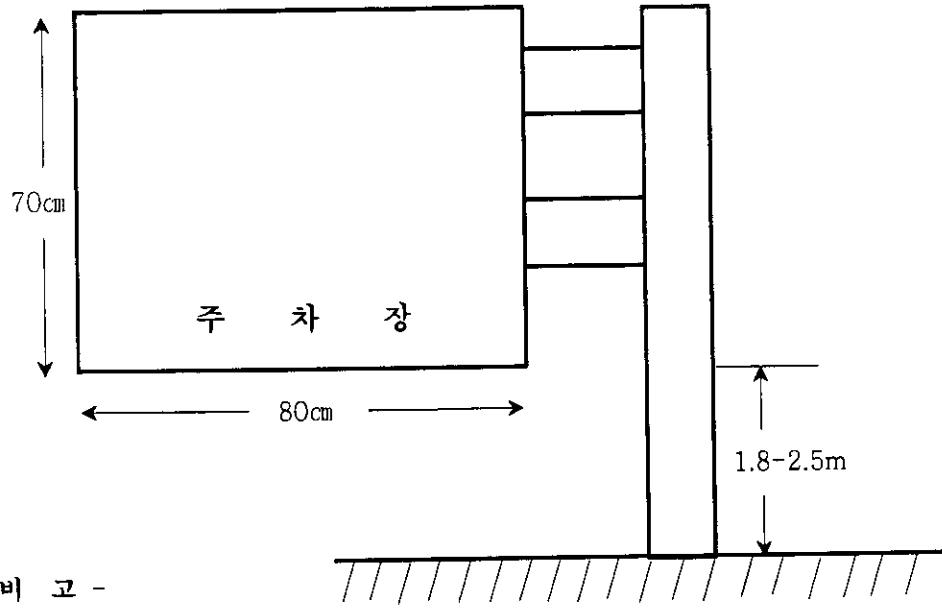


- 비 고 -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 씨(고딕)
노상주차장	주차장 상황에 따름	녹색	흰색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장 상황에 따름	녹색	흰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 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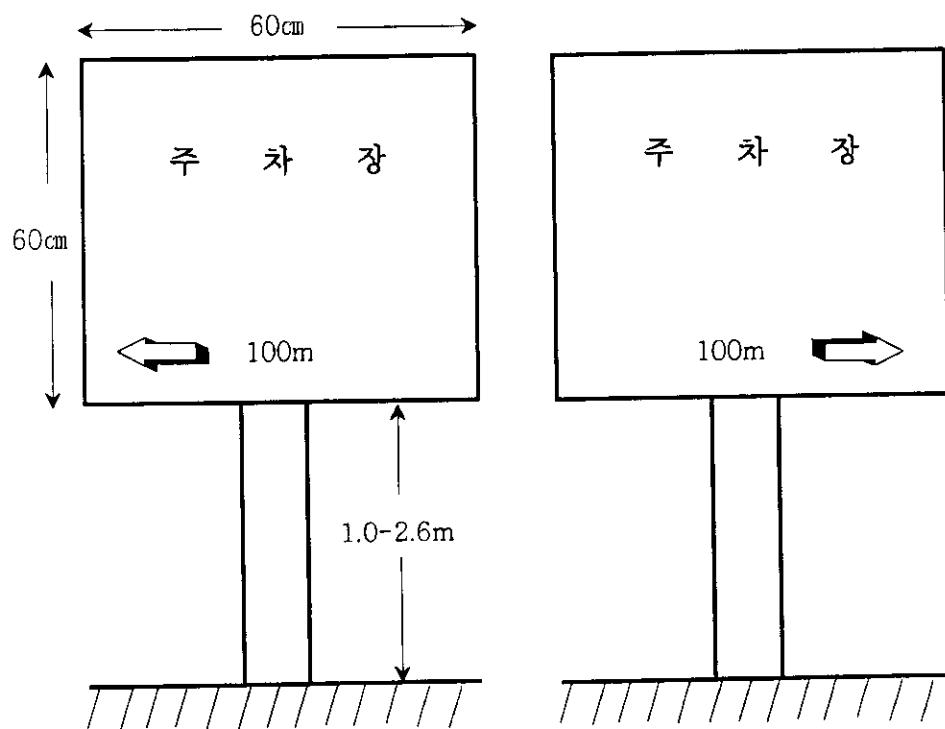
2. 노외주차장 표시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 바탕(청색)
-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cm × 세로 25cm)
문자(가로 17cm × 세로 17cm)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3.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 (청색)
 - 문자 및 기호 (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2]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제7조 및 제10조 관련)

급 지 구 분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선 불)	월 정기 주차요금 (선 불)			
			주간	야간	전일	주말·공휴일
1 급 지	500원	5,000원			70,000원	
2 급 지	300원	2,000원			40,000원	
3급지	환승차량	200원	2,000원		30,000원	
	비환승차량	500원	5,000원		70,000원	
거주자 전용 주차장			20,000원	15,000원	30,000원	5,000원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간과 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 : 08:00 ~ 20:00

나. 야간 : 20:00 ~ 익일 08:0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2·3급지를 제외한 주차장으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안산동 소재 수암봉주차장

나. 2급지 : 제24주차장, 제25주차장, 반월, 대부, 안산동소재 주차장(수암봉 주차장을 제외한다)

다. 3급지 : 시장이 지정한 역세권 환승주차장

라. 거주자 전용 주차장 : 거주자 또는 근로자 전용 노상주차장

4. 철도 환승목적으로 환승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이용 확인증 또는 재직 증명서에 의해 확인 받은 자에 한하여 3급지 환승요금을 적용하며,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월정기 주차권은 주차장 관리자와 사전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한다.

5. 주차요금은 지역특성 및 차종에 따라 정하되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6.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안산시에서 발행한 자가용 부제 운행참여 스티커 부착 차량은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할인하여 부과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퍼센트를 감면한다.

-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상이자 동승)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인(장애인동승)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다만, 4급 내지 7급의 상이자(상이자 동승) 및 4급 내지 6급의 장애인(장애인 동승)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주차후 1시간 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1시간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마. 모범 납세자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안산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 한 차량에 대하여는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 바. 시책업무 추진목적으로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 자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40분(500원)을 주차할 수 있다. 다만, 40분 이후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사. 외교사절, 외교관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의 자동차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
- 아.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면제할인할 수 있다.
7.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가.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 공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중 공용시설보호지구
: 09:00 — 19:00 (토요일 09:00 ~ 14:00)
- 나. 상업지역(일반 상업지역중 공용시설 보호지구 제외), 준주거지역
: 09:00 ~ 23:00
- 다. 환승(역세권)주차장 : 05:00 ~ 23:00
- 라. 건축물식 공영유료주차장(주차빌딩) : 연중 휴일 없이 1일 24시간 운영
8. 기준요금은 30분 단위로 징수하되, 기준시간을 초과한 10분이내의 추가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9.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10. 1일 주차요금이라 함은 장시간 주차를 목적으로 관리자에게 신청하여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날 주차장 운영 개시 이전까지 유효하다.

[별표 3]

주차장 현황(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급지	주차장명	위 치
2	제24주차장	원곡동 991-2
2	제25주차장	원곡동 991-1
3	한대앞역환승주차장	이동 622-3
3	중앙역환승주차장	고잔동 723
3	고잔역환승주차장	고잔동 679-1
3	안산역환승주차장	원곡동 380

[별표 4]

차고지 주차요금(제12조제2항 관련)

구 分	규모별 기준금액	
	차량 규모	월 정기요금(원)
택 시	개인택시, 렌트카(승용)	60,000
	2.5톤 미만	70,000
화물자동차	2.5톤 이상- 4톤미만	80,000
	4톤 이상	90,000
승합자동차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80,000
	25인승 이상	90,000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 ²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 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 통신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3. 제1종 균린생활시설(건축물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m ² 초과 150m ²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m ²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87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数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m²)</th> <th>주차장설치기준 (대/m²)</th> </tr> </thead> <tbody> <tr> <td>85이하</td> <td>1/85</td> </tr> <tr> <td>85초과</td> <td>1/70</td> </tr> </tbody> </table>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m ²)	주차장설치기준 (대/m ²)	85이하	1/85	85초과	1/70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m ²)	주차장설치기준 (대/m ²)						
85이하	1/85						
85초과	1/70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인 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50m ² 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m ² 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 비 고 -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균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저희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 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 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수점 이하의 끝 수는 1로 본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경사파트식

나. 2단 경사승강식

다. 2단 단순승강식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6]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설치 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2. 설치 가능 시설물

상업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3. 설치 대수

가.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 기준의 50대 미만
: 자주식 주차장 설치

나.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50대 이상
: 최대 20% 이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
방식의 3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

4. 설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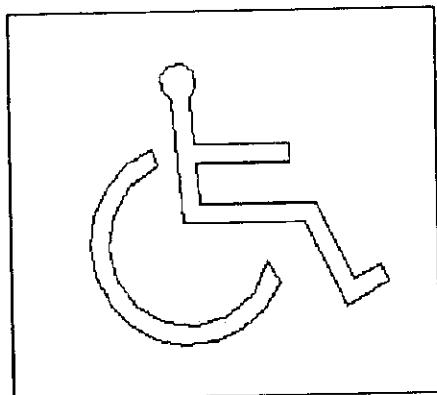
제2호의 설치가능 시설물 중 집합건축물은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5. 예외

가.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7]

장애인전용표지(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 비고 -

○ 규격

- 표지판 : 40cm × 40cm
-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0cm × 세로 32cm

○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16조제1항 관련)

(앞면)

□□←———— 9cm —————→□□

↑
6cm ↓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안 산 시 장 (인)	

- 비 고 -

- 바탕 : 하늘색
- 글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도시철도 이용확인증(별표2 제4호와 관련)

수도권 도시철도 이용확인증													
<input type="radio"/> 확인 일 시													
<input type="radio"/> 이용 철도역 확인란													
<p>1. 위와 같이 도시철도 이용을 확인받은 이용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환승주차 요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회주차요금 (1구획당 30분)</th> <th>1일 주차요금</th> <th>월정기주차권</th> </tr> </thead> <tbody> <tr> <td>환승차량</td> <td>200</td> <td>2,000</td> <td>30,000</td> </tr> <tr> <td>비 환승차량</td> <td>500</td> <td>5,000</td> <td>70,000</td> </tr> </tbody> </table> <p>2. 다만, 본 확인증의 혜택은 시장이 지정한 환승주차장(당해 주차요금 계시판에 지정여부 표시)에 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주소 :</p> <p>차종 및 번호 :</p> <p>연락처 :</p> <p>신청인 성명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radio"/> ○ 역 환승주차장</p>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획당 30분)	1일 주차요금	월정기주차권	환승차량	200	2,000	30,000	비 환승차량	500	5,000	70,000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획당 30분)	1일 주차요금	월정기주차권										
환승차량	200	2,000	30,000										
비 환승차량	500	5,000	70,000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확보 노력) <신설>	제2조(주차장 확보 노력)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택 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거부금지) <신설>	제3조(주차거부금지) 시장 또는 주차장 관리 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조(주차장이용안내 표지)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이용에 관한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①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현 행	개 정 안															
	<p>②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한다.</p> <p>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시방법, 설치위치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p>															
<p>제4조(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 ①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 능력 부족으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위·수탁 계약이 중도 해지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한다.</p> <p>1. 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p> <p>2.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주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 또는 능력(실적)이 있는 자</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구 분</th>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선 정 방 법</th>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납 부 하여야 할 금액</th>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납 부 방 법</th> </tr> <tr> <td style="padding: 5px;">제1항제1호의 경우</td> <td style="padding: 5px;">시장이 정하는 방법</td> <td style="padding: 5px;">시장이 정하는 방법</td> <td style="padding: 5px;">시장이 정하는 방법</td> </tr> <tr> <td style="padding: 5px;">제1항제1호 이외의 경우</td> <td style="padding: 5px;">수의 계약</td> <td style="padding: 5px;">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료</td> <td style="padding: 5px;">1개월 단위로 선납</td> </tr> <tr> <td style="padding: 5px;">기타의 경우</td> <td style="padding: 5px;">경쟁 계약</td> <td style="padding: 5px;">입찰금액(단, 제3항 규정에 의한 수탁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td> <td style="padding: 5px;">1개월 단위로 선납</td> </tr> </table>	구 분	선 정 방 법	납 부 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경우	수의 계약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료	1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 계약	입찰금액(단, 제3항 규정에 의한 수탁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1개월 단위로 선납
구 분	선 정 방 법	납 부 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경우	수의 계약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료	1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 계약	입찰금액(단, 제3항 규정에 의한 수탁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1개월 단위로 선납													

현 행	개 정 안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에 있어 토지의 지적공부상 도로, 하천, 임야일 경우 인근대지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p> <p>⑤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⑥ 수탁자가 계약기간중 주차장관련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⑦ 재계약시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낙찰가와 당초 계약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을 감안하여 정한다.</p> <p>⑧ 수탁자는 공영유료주차장내 차량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하며,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⑨ 시장은 수탁자가 국가·경기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로 인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⑩ 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금액은 주차면수 및 주차면적, 무료개방 및 사용일수, 납부할 금액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산정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수의계약시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수탁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에 있어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임야일 경우 인근대지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p> <p>⑤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⑥ 재계약시 수탁료는 당초 수탁료와 계약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p> <p>⑦ 시장은 국가·경기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로 인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⑧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금액은 주차면수 및 주차면적, 무료개방 및 사용일수, 납부할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산정한다.</p> <p>제6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주차장 관리자가 계약기간 중 주차장관련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② 주차장 관리자는 공영유료주차장내 차량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주차요금) ① <u>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 ⑤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p> <p>제7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차요금 외에 당해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주차장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p>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현 행	개 정 안
<p>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p>③ 주차구획선을 초과하여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점유한 만큼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p> <p>⑤ 주차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또는 잔여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운영의 중지 또는 폐지 2.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차불가 3.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 요청 <p>③ 주차구획을 초과하여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차량이 점유한 주차구획 만큼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p> <p>④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p>
<p>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신설></p>	<p>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신설></p>	<p>제10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 노상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반월시화국가 산업단지 노상에는 근로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의해 설치하는 거주자 또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는 “거주자”라 한다) 전용주차 구간에 대하여는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당해지역 거주자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별표 2의 이용요금을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③ 거주자 전용주차 구간에는 주차구획 및 이용 시간을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④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는 별표 1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⑤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노외주차장은 이를 제외한다.</p> <p>② <생략></p>	<p>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노외주차장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2(차고지 제공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공영유료주차장(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면적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기장 확보 의무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고지 또는 주기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면적은 “1 주차면적 11.5m²(2.3mx5m) x 주차면수”로 한다.</p> <p>1.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 2.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 1·2·3급지 주차장 주차면적의 30퍼센트 범위 이내</p> <p>2. 건설기계, 2.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노선 여객 자동차는 제외) : 별표2의2가 정하는 주차장 주차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이내. 다만, 별표2의 2외 2·3급지 주차장은 시설보완 전까지 제외한다.</p> <p>② 공영유료주차장을 차고지 또는 주기장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와 차고지 또는 주기장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또는 주기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익월 5일까지 계약체결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①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1.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 2.5톤 미만의 개별화물자동차 : 1·2·3급지 주차장 주차면적의 30퍼센트 범위 이내</p> <p>2.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노선여객 자동차는 제외) : 별표3이 정하는 주차장 주차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이내</p> <p>② 제1항에 의하여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4의 월 정기 주차금액으로 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p> <p>③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기타 계약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부대시설의 종류)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균린생활시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업무 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제13조(부대시설의 종류)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균린생활시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제7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감)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감기준은 별표3과 같다.	<p>제3장 부설주차장</p> <p>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별표 6을 적용한다.</p> <p>③ 기계식주차장(지하식, 전축물식)의 경우 도시미관 저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는 등 그 사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p>
제8조(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 범위) 법 제19조제4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p> <p>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② ~ ③ <신설>	
② <신설>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할 경우에는 별표4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10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무상 사용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른 월정기주차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p> <p>③ <신설></p>	<p>제16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고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2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p> <p>③ 시장은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9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p> <p>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p>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4. 건축비는 당해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p> <p>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p> <p>2. <생략></p> <p>3. <삭제></p> <p>4. <생략></p>	<p>4. 건축비는 당해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p> <p>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및 토지 가액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제10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① 영 별표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주차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구분·설치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p> <p>3. 장애인용 경사도에 가장 가까운 장소</p> <p>②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p> <p>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p> <p>2. 주차장 바닥면적에는 별표5의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p>	<p>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p> <p>3.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p> <p>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p> <p>1. 주차구획의 바닥 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p> <p>2. 주차구획의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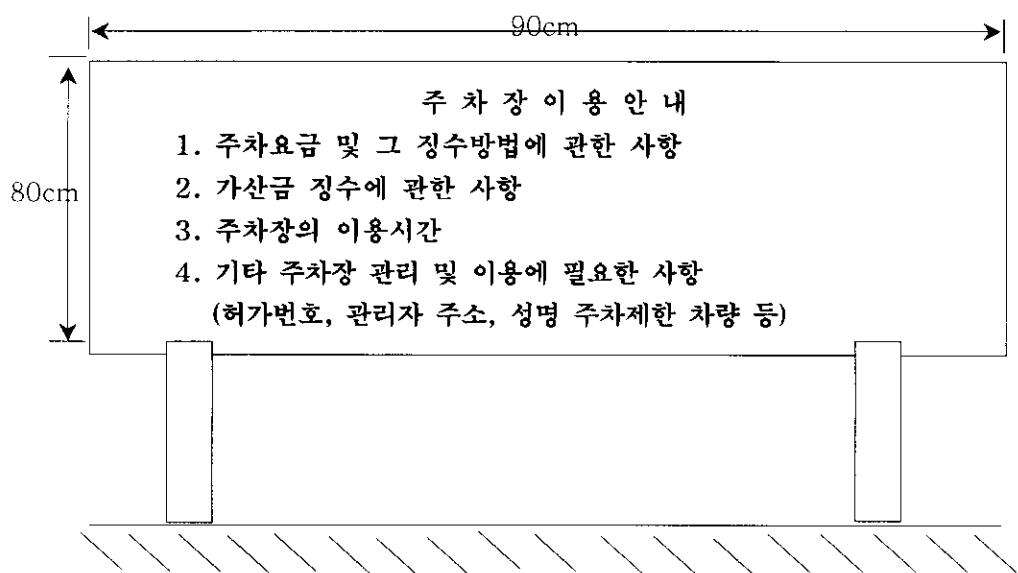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③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p>제11조(보조) <삭제></p>	<p>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구획입구에는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p>제19조(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운동장 등의 야간개방) <신설></p>	<p>제19조(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운동장 등의 야간개방) ①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등 (이하 이 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야간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시설보완 등의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p> <p>③ 부설주차장의 이용은 유료로 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제7조 별표 2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안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한다.</p> <p>④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정해진 주차시간 외의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견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 주차차량을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제3항에서 정한 월정주차료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옥상주차장 설치) <신설>	제20조(옥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서비스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 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권한위임) <신설>	제21조(권한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제12조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설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별표 1]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설치기준(제4조 관련)

1.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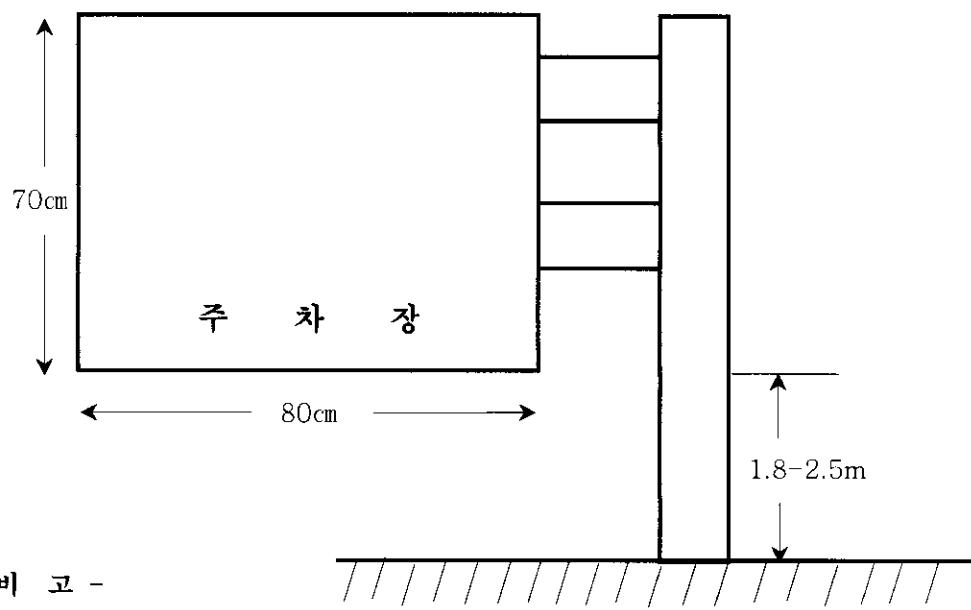


- 비 고 -

구 分	재 료	색 채	
		바 탕	글 씨(고딕)
노상주차장	주차장 상황에 따름	녹색	흰색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장 상황에 따름	녹색	흰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 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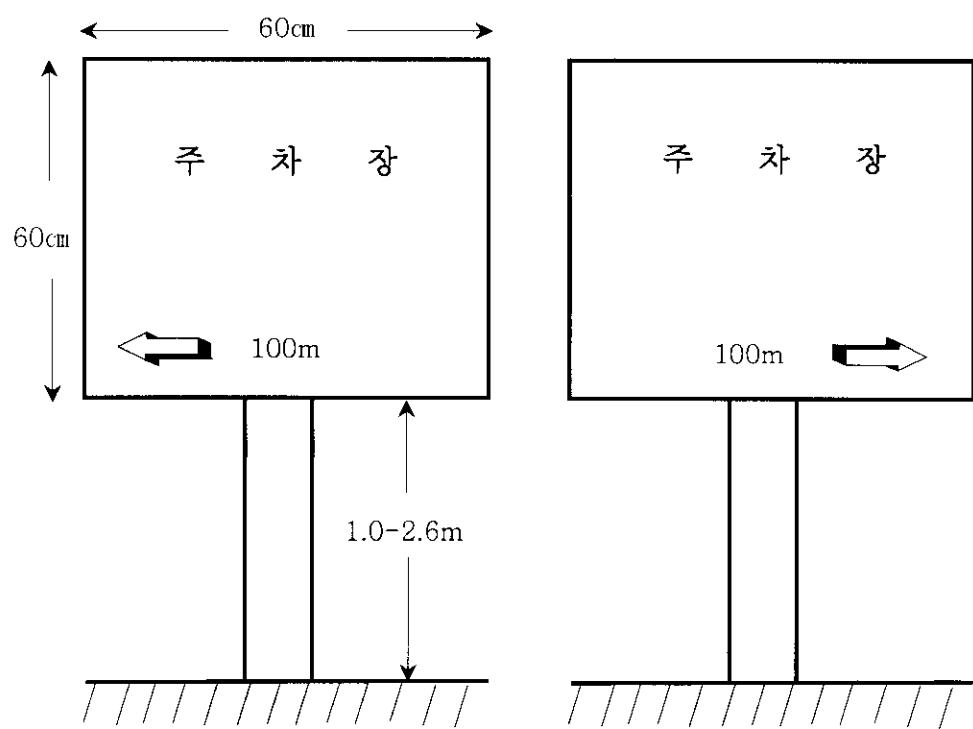
2. 노외주차장 표시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 바탕(청색)
-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cm × 세로 25cm)
문자(가로 17cm × 세로 17cm)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3.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 (청색)
 - 문자 및 기호 (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2]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제7조 및 제10조 관련)

급 지 구 분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선 불)	월 정기 주차요금 (선 불)			
			주간	야간	전일	주말/공휴일
1 급 지	500원	5,000원			70,000원	
2 급 지	300원	2,000원			40,000원	
3급지	환승차량	200원	2,000원		30,000원	
	비환승차량	500원	5,000원		70,000원	
거주자 전용주차장			20,000원	15,000원	30,000원	5,000원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간과 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주간 : 08:00 ~ 20:00
 - 나. 야간 : 20:00 ~ 익일 08:0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2·3급지를 제외한 주차장으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안산동 소재 수암봉주차장
 - 나. 2급지 : 제24주차장, 제25주차장, 반월, 대부, 안산동소재 주차장(수암봉 주차장을 제외한다)
 - 다. 3급지 : 시장이 지정한 역세권 환승주차장
 - 라. 거주자 전용주차장 : 거주자 또는 근로자 전용 노상주차장
4. 철도 환승목적으로 환승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이용 확인증 또는 재직 증명서에 의해 확인 받은 자에 한하여 3급지 환승요금을 적용하며,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월정기 주차권은 주차장 관리자와 사전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한다.
5. 주차요금은 지역특성 및 차종에 따라 정하되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6.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음과 같다.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나. 안산시에서 발행한 자가용 부제 운행참여 스티커 부착 차량은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 퍼센트를 할인하여 부과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퍼센트를 감면한다.

-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상이자 동승)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인(장애인동승)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다만, 4급 내지 7급의 상이자(상이자 동승) 및 4급 내지 6급의 장애인(장애인 동승)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주차후 1시간 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1시간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마. 모범 납세자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안산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 바. 시책업무 추진목적으로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 자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40분(500원)을 주차할 수 있다. 다만, 40분 이후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사. 외교사절, 외교관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의 자동차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
- 아.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면제·할인할 수 있다.
7.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가.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 공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중 공용시설보호지구 :
09:00 — 19:00 (토요일 09:00 ~ 14:00)
- 나. 상업지역(일반 상업지역 중 공용시설 보호지구 제외), 준주거지역 :
09:00 ~ 23:00
- 다. 환승(역세권)주차장 : 05:00 ~ 23:00
- 라. 건축물식 공영유료주차장(주차빌딩) : 연중 휴일 없이 1일 24시간 운영
8. 기준요금은 30분 단위로 징수하되, 기준시간을 초과한 10분이내의 추가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9.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10. 1일 주차요금이라 함은 장시간 주차를 목적으로 관리자에게 신청하여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날 주차장 운영 개시 이전까지 유효하다.

[별표 3]

주차장 현황(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급지	주차장명	위 치
2	제24주차장	원곡동 991-2
2	제25주차장	원곡동 991-1
3	한대앞역환승주차장	이동 622-3
3	중앙역환승주차장	고잔동 723
3	고잔역환승주차장	고잔동 679-1
3	안산역환승주차장	원곡동 380

[별표 4]

차고지 주차요금(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규모별 기준금액	
	차량 규모	월 정기요금(원)
택 시	개인택시, 렌트카(승용)	60,000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70,000
	2.5톤 이상~ 4톤미만	80,000
	4톤 이상	90,000
승합자동차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80,000
	25인승 이상	90,000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 ²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 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 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m ² 당 1대						
3. 제1종 균린생활시설(건축물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m ² 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m ² 초과 150m ²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m ²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87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数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table border="1"><thead><tr><th>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m²)</th><th>주차장설치기준 (대/m²)</th></tr></thead><tbody><tr><td>85이하</td><td>1/85</td></tr><tr><td>85초과</td><td>1/70</td></tr></tbody></table>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m ²)	주차장설치기준 (대/m ²)	85이하	1/85	85초과	1/70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m ²)	주차장설치기준 (대/m ²)						
85이하	1/85						
85초과	1/70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인 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50m ² 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m ² 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m ² 당 1대						

- 비 고 -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균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활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 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 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수점 이하의 끝 수는 1로 본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경사파트식

나. 2단 경사승강식

다. 2단 단순승강식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설치 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2. 설치 가능 시설물

상업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3. 설치 대수

가.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 기준의 50대 미만
: 자주식 주차장 설치

나.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50대 이상
: 최대 20% 이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
방식의 3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

4. 설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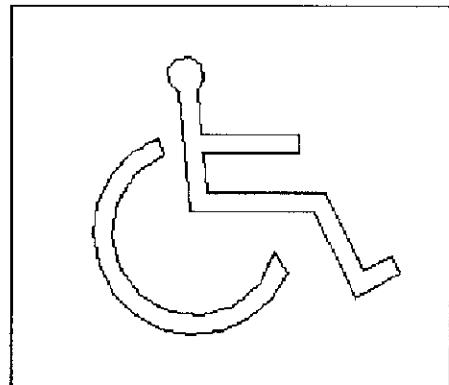
제2호의 설치가능 시설물 중 집합건축물은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5. 예외

가.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7]

장애인전용표지(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 비고 -

○ 규격

- 표지판 : 40cm × 40cm
-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0cm × 세로 32cm

○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16조제1항 관련)

(앞면)

□□←———— 9cm —————→□□

↑
6cm ↓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전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안 산 시 장 (인)	

- 비 고 -

- 바탕 : 하늘색
- 글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도시철도 이용확인증(별표2 제4호와 관련)

수도권 도시철도 이용확인증													
<input type="radio"/> 확인 일 시													
<input type="radio"/> 이용 철도역 확인란													
<p>1. 위와 같이 도시철도 이용을 확인받은 이용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환승주차 요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1회주차요금 (1구획당 30분)</th> <th style="width: 25%;">1일 주차요금</th> <th style="width: 25%;">월정기주차권</th> </tr> </thead> <tbody> <tr> <td>환승차량</td> <td>200</td> <td>2,000</td> <td>30,000</td> </tr> <tr> <td>비 환승차량</td> <td>500</td> <td>5,000</td> <td>70,000</td> </tr> </tbody> </table> <p>2. 다만, 본 확인증의 혜택은 시장이 지정한 환승주차장(당해 주차요금 게시판에 지정여부 표시)에 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주소 :</p> <p>차종 및 번호 :</p> <p>연락처 :</p> <p>신청인 성명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radio"/> ○ 역 환승주차장</p>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획당 30분)	1일 주차요금	월정기주차권	환승차량	200	2,000	30,000	비 환승차량	500	5,000	70,000
구 분	1회주차요금 (1구획당 30분)	1일 주차요금	월정기주차권										
환승차량	200	2,000	30,000										
비 환승차량	500	5,000	70,000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46
----------	------

제안년월일 : 2008. 9. 22.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신설하였고, 시장의 권한위임 부분을 일부로 축소하였으며, 문구 등을 명확히 함.

2. 주 요 골 자

-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새로이 규정함(안 제11조).
- 학교운동장을 학교부설주차장으로 명확히 함(안 제20조).
- 시장의 권한 위임 부분을 일부로 축소함(안 제22조).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예외로 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70 이하
2. 용적율 : 1천 1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60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가.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 나.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36배/도로의 폭 이하. 다만, 배율 1.8배 미만인 경우 1.8배로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 조명 및 제1항 중 “학교운동장”을 “학교부설 주차장”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1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부”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u>〈신설〉</u>	<p><u>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예외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건폐율 : 100분의 70 이하</u> <u>2. 용적율 : 1천 100퍼센트 이하</u> <u>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60제곱미터 이상</u> <u>4. 높이제한</u> <p class="list-item-l1">가.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p> <p class="list-item-l1">나.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배/도로의 폭 이하. 다만, 배율 1.8배 미만인 경우 1.8배로 한다.</p> <p class="list-item-l1">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p>
<u>제11조 ~ 제13조(생략)</u>	<u>제12조 ~ 제14조(원안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와 같음)</u>
<u>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u> <u>②~③(생략)</u>	<u>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영-----</u> ----- ----- ----- ----- ----- ----- <u>②~③(원안과 같음)</u>

원 안	수 정 안
<u>제15조~제18조(생략)</u>	<u>제16조~제19조(원안 제15조부터 제18조 까지와 같음)</u>
<u>제19조(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운동장 등의 야간개방) ① 시장은 도시 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등(이하 이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야간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②~⑤(생략)	<u>제20조(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부설주차장 등의 야간개방) ① -----</u> ----- <u>학교부설주차장-----</u> ----- ②~⑤(원안과 같음)
<u>제20조(생략)</u>	<u>제21조(원안 제20조와 같음)</u>
<u>제21조(권한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u>제22조(권한위임) -----</u> ----- <u>일부-----</u> -----
<u>제22조(생략)</u>	<u>제23조(원안 제22조와 같음)</u>
<u>부칙</u>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12조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2009.1.1.부터 시행한다.</u>	<u>부칙</u> <u>제1조(시행일) -----</u> ----- <u>제13조-----</u> -----